

주요국의 경쟁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요지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항소 판결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 사가 셔먼 법 제1조 및 제2조에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구제조치를 명령한 지방 법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소송은 미합중국에 의한 신고 및 개별 주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셔먼법 제2조에 위반하여 인텔의 호환 PC 운영체계시장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인터넷 열람소프트(브라우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획득을 기도하였으며, 셔먼법 제1조에 위반, 2개의 개별제품인 윈도우즈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법하게 기워팔기 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은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책임을 입증한 사실과 동일 사실이 주법에서의 유사한 반독점 규정에 의한 책임도 인정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 동 사의 OS(운영체계사업)사업과 Application(응용)사업으로 나누는 분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방법원의 구제조치명령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에 관해 몇 가지의 잠정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항소는 법적 결론 및 동 결과로서의 구제조치명령의 쌍방에 대해 다투는 것이다. 이 항소에는 3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3개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지방법원의 법적 결론 및 이에 대한 절차와 사실과 관련된 몇 가지 근거에 이의를 주창하고 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방법원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심문을 행하지 않았고, 명령의 거의 모든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구제조치명령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소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일부 매체와 같이) 용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접촉을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송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사항에 관

해 적절치 못한 공적 코멘트를 행하는 것은 윤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러한 윤리적인 위반이 지방법원

의 공평을 해손시키는 것이며 동 판사의 자격박탈 및 사실인정, 법적 결론 및 최종 판결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사실인정, 법적 결론, 법원에 제출된 증언 및 증거, 당사자의 준비서면 및 구두변론을 포함, 막대한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책임에 관한 이의신청 가운데 일부는 소송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체계(OS)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경쟁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파기하며,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코져 기도한 것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자사의 브라우저를 자사의 운영체계에 끼워팔기 함으로써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한 지방법원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반려한다.

우리의 판단은 원고의 셔먼법 위반 주장에 관한 주법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정에도 영향이 미친다.

우리는 또한 지방법원의 구제조치명령을 포함, 최종판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의신청에 소송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사항을 인정한다. 이

결론을 지지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공소심리에 잔존하지 않는 몇 가지의 법적 책임의 결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구제조치명령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지방법원이 구제조치에 특화된 사실에 관한 증거심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법적 책임의 결정을 완전히 지지하는 구제조치명령을 취소하고 반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방법원판사가 일부 매체와 비밀 인터뷰를 행함으로써 용인할 수 없는 접촉을 행하고, 법정 외의 공적인 성명서(statement)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격적인 코멘트를 다수 행하여, 불공평을 일으키게 하였기 때문에 구제조치에 관한 최종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증거는 없으나, 우리는 지방법원 판사의 행동이 지방법원의 절차를 현저히 부패시키고, 사법절차의 고결에 의문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조치에 관한 최종판결을 취소하고, 구제조치 명령의 재심을 위해 본 건을 반려하고 이 때에는 새로운 일심판사가 선임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가 부정을 시정하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믿는다.

요약하여 말하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파기하며, 일부는 반려한다. 우리는 구제조치명령을 포함하는 최종판결부분을 대부분 취소하고 이 판결에서 기술한 의견과 일치된 새로운 절차를 위하여 다른 일심판사

에 본 건을 반려한다.

2001. 6. 28.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공소법원 판결문

**GE/Honeywell 매수에
대한 EU의 결정에 관한
Charles A. James
독점국장의 성명**

EU 결정은 중요한 상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실제로, 본 건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를 통해 광범한 협의를 했다. 본 건은 정책에 대한 한 층의 수렴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01. 7. 3. 법무부 독점국 발표

**미 연방법무부,
합병심사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

미국, Charles A. James 독점국장은 GE/Honeywell 매수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의 결정 발표 후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독점국이 GE의 Honeywell 매수에 대해 광범위한 심사를 한 결과, 당해 매수가 우리가 요구한 문제해소조치에 의해 수정되고 경쟁촉진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의 결론은 결합후의 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세계 고객으로부터의 확인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점이 경쟁의 본질이다.

그러나 EU는 보다 다각화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참여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 명백히 결론지었다. 이 결과 우리는 관련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상태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명백히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독점금지정책은 독점금지법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금일의

Charles A. James 연방법무성 독점금지국 법무보좌관은 지난 8월 7일 사업자들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경제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실판단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집중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증거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합병심사에 관한 새로운 심사 프로그램을 구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건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법조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의 124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법적·경제적 문제의 검증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핵심적인 사실발견에 기여할 것이며 증거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 시행될 이 프로그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가능한 경쟁적인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 최초 Hart-Scott-Rodino법의 30일 간의

대기간과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둘째는 가능한 경우에 조사수행을 위한 특정계획을 당사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초기에 상의하는 것이다. 1976년의 The Hart-Scott-Rodino 법은 Clayton법을 수정하여, 특정가치 이상의 자산이나 주식의 인수·합병을 의도하고 있는 특정규모 이상의 개인과 기업들에게 대기간을 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조사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불필요한 책략적인 행위들을 제거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인들의 조사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민간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James 법무보좌관은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독점금지국 직원들은 관련 법무보좌관과 협의하여 심사절차에 관한 합의에 대해 당사자들과 체결할 권한을 담당부서에 위임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담당국은 내부적인 조사절차를 완료하는데 대한 시간계획표를 작성하고, 특정한 경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담당국에 제출된 사업자간의 거래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사자들에게는 정보의 제출과 특별한 조사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특정 조사 절차에 따를 것이 요구될 것이다.

어떻게 절차가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가 결정될 것이다. 즉, 검토절차 안에서 사건의 복잡

성, 조사 진행중인 문제들과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전문적 지식, 적절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데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유형, 기소 결정에 의한 소송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특히 당국과 사업자들의 조사에 대한 절차적 합의를 위한 잠정적인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 담당국이 당해 산업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조사 결과 하나 혹은 두 가지의 핵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독점금지국은 사전 조사절차 동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집중 할 것이며, 사업자들의 거래행위를 기소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에 적절한 시간적, 절차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 담당국은 현실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의 중요시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다.
- 담당국은 법무보좌관의 궁극적인 집행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은 독점금지국의 합법적인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점금지국 직원과 함께 그러한 필요성을 총족시키기 위해 유연한 태도로 협조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당국이 사건조사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라고 James 법무보좌관은 밝히고 있다.

만일 당사자가 그들이 과거에 해왔

던 것처럼 Hart-Scott-Rodino법 상의 2차 요구(second request)에만 따르는 것을 고집한다면, 법무부 당국은 결국 법률상의 대기간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동 법 하에서 신고하도록 정해진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그 거래가 완전히 체결되기 전에 사업자들간의 거래가 신고된 후 30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만일 최초 30일의 대기간 동안 연방독점금지국이 2차 요구로 불리워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게 되면, 연방독점금지국은 당사자들이 이 2차 요구에 응한 후부터 30일의 추가대기간을 가지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집행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1. 8. 7. 미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입찰담합 및 공모혐의자에 대해 벌금형 및 손해배상금 을 지급도록 명령

NEW YORK주의 Nick Penachio Co.은 NEW YORK Board of Education(NYCBOE)와 또 다른 정부기관이 입찰한 2억 달러 이상의 식품 계약에서 입찰담합과 입찰표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와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어 4백 20만 달러의 벌금과 동일액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고 연방법무성이 8월 29일 발표했다. 이 판결은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의 Jed S. Rakoff 판사에 의해 선고되었다. Rakoff 법관은 이 공모에 참여한 혐의로 Nick Penachio

Co.사의 회장인 Nicholas A. Penachio에게 4년의 징역형과 1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 외에 그는 그의 회사와 함께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백 2십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Nicholas Penachio에게 선고된 이 판결은 연방독점금지국이 수행한 기소에서 얻어진 개인에 대한 형사판결 중 최장 수감기간이다. 그것은 공공 기관과 미국의 일반세금 부담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입찰담합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른 자들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연방독점금지국의 법무보좌관을 맡고 있는 Charles A. James는 밝혔다.

Penachio와 그의 회사는 the NYCBOE,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DCAS), the Nassau County (NY)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와 the Newark (NJ) Public Schools에 공급되는 냉동식품과 육류, 기타 다른 상품에 대한 입찰담합계획에 참여하였다 고 올해 2월 20일 시인한 바 있다. 추 가적으로 이들은 리베이트와 횡령을 통해 수많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시인하였다. 즉,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연방 세입국 (Internal Revenue Service)을 속이는데 공모하였으며, 연방대배심에 의해 소환된 범죄와 연루된 서류들을 파기함으로써 정의의 파괴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Frank H.

Russo는 Denny Chin 맨하튼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2001년 8월 21일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그가 소유한 기업인 FHR Inc.와 함께 Russo는 NYCBOE에 대한 전체 1천2백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액 중 적어도 2백12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받았다. Russo와 FHR Inc.은 지난 2001년 3월 2일 NYCBOE가 발주한 냉동식품 납품 계약에 입찰담합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Russo는 또한 리베이트와 입찰담합을 통해 맨하튼에 위치한 비영리사업단체인 Odyssey House Inc.를 기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NYCBOE에 대한 2백만 달러를 넘는 손해배상 외에도, Russo는 Odyssey House에 대해 2만7천5백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들 피고들은 2001년 6월 1일 기소된 22명의 개인들과 13개 식품회사들의 일부로서 NYCBOE에 대한 식품 공급과 배달을 위한 입찰담합혐의로 기소되었었다. David Salomon이라는 개인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유죄를 시인하였으며, David Salomon은 3 주간의 심리 후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들은 모두 연방독점금지국 뉴욕지부의 조사와 연방세입국의 범죄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들 사건 및 관련사건들에서 피고들은 대략 9백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NYCBOE에 지급하도록 판결받았고,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9월까지 모두 완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NYCBOE는 미국에서 가장 큰

New York의 공립학교 시스템이다. 거의 110만명의 학생에 대해 매일 640,000인분의 점심과 150,000인분의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이는 미국 방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식품 소비자이다. 주로 연방, 주, 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식사는 1946년의 the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미국 농업국이 보조를 하고 있다.

공립학교 외에 수많은 사립학교와 종교단체 학교가 NYCBOE와의 계약을 통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따라 음식을 공급받고 있는데, NYCBOE가 공급하는 음식을 소비하는 학생 80%는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나머지 20%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2001. 8. 29. 연방법무부 발표

FTC, 판매홍보와 신용관련 상품의 판매를 금지

Georgia주 Atlanta시에서 Home-Life Credit Services(이하 Home-Life) 영업을 하고 있는 Mark Alan Conway는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합의안에서 신용관련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영구히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Mark Alan Conway는 또한 자신으로부터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사실을 오도하는 부당

표시를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통신판매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Conway는 연방거래위원회의 HomeLife 신용서비스에 대한 2000년도 사건의 피고로서 지목된 두 명 중 한 명이다. 이 사건은 이들이 2000년 선불 대부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이들은 공격적인 선전방식으로 기업들과 개인들을 목표로 삼아 기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금을 내면 대부금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판매자가 대부를 얻거나 대부의 약정 혹은 신용의 연장이 가능함을 확실하게 제시 또는 보증해야 하므로, 대부금액을 받기 전이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혹은 다른 신용의 연장 전에 소비자에게 선금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소비자들의 항의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HomeLife는 Georgia 주 Atlanta시의 한 보일러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을 하면서 California 주의 Los Angeles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하였고, 그곳 명의로 매일 을 발송하였다. HomeLife는 통신판매원을 이용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무담보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도록 유인하였고, 129.95달러의 수수료를 한번 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2,500달러의 신용한도를 가진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될 것이라고 허위로 광고하였다.

HomeLife는 소비자들의 은행 계좌로부터 그 수수료를 인출해 갔으나, 소비자들은 약속한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HomeLife로부터 그들이 신용카드신청을 할 수 있는

은행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소포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그 회사가 편지 봉투에 기재한 주소로 항의서를 보낸 소비자들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온 편지를 돌려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00년 6월 California 연방지방법원에 HomeLife Credit Services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업자들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다. 여기서 연방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이 부당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비용을 받고 신용카드 발급을 약속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연방통신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Carlos Moreno 법관은 잠정적인 구속 조치와 HomeLife Credit Services에 대한 모든 자산동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2000년 9월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소장에 Georgia 주 Atlanta시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들인 Mark Alan Conway 과 William Anderson을 개인 피고로써 특정하여 기소장을 변경하였다.

향후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최종 합의문에 규정된 내용에는 Conway가 앞으로 신용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 판매홍보, 통신판매, 판매 혹은 판매의 제공 및 동일 행위에 대하여 타인을 보조하는 행위 일체를 영구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onway가 신용카드, 대부 혹은 다른 신용의 연장과 관련된 서비스의 판매와 연관된 실질적인 사실에 대한 부당표시를 금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도 영

구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이외에도, 합의문에서는 만일 Conway가 연방거래위원회에 그의 재정적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즉시 부과될 338,940달러에 대한 보류결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 합의문은 또한 Conway가 모든 모집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현금화되지 않은 모든 수표는 소비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고객 명단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그 합의안은 연방거래위원회가 피고의 명령지시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기록유지와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최종 합의안을 5-0으로 승인하였고, 이것은 미국 California 연방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1년 8월 24일 송부되어 법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최근 미국 전역에 걸쳐 이와 같은 무담보 신용카드의 발급을 조건으로 사전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제3자가 판매한다고 사기적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01. 8. 31. 연방거래위원회 발표

EU

**유럽위원회,
GE의 Honeywell 매수
금지키로**

유럽위원회는, GE(General electric)에 의한 Honeywell의 매수 계획을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항공 엔진, 항공전자기기 및 기타 항공기용 부품과 시스템 시장에 대한 세밀한 심사의 결과였다. 이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유럽위원회는 본 건 매수가 몇몇 시장에 있어 지배적 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하고, GE로부터 제안된 문제해소조치는 하니웰 매수계획으로 생기는 경쟁상의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신고에 의하면 GE와 하니웰의 결합이 항공우주산업에서의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특히 항공회사의 고객에게 높은 가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계획을 추진시킬 방법은 있었다. 양 사가 위원회의 경쟁상의 우려에 대처하는 해결책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마리오 몬테 유럽위원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말했다.

몬테는 또한 미국 독점금지 당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럽위원회와 미국 사법부는 본 건 심사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

렀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쌍방 당국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감스럽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리스크는 완전히 불식될 수 없었다. 이것은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일방의 당국이 법 해석적인 분석을 행하고 상대방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우리는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획의 효과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E/Honeywell의 안건은 대서양 횡단 경쟁당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사례이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후 두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GE와 하니웰은 2001. 2. 5. 유럽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구하는 매수계획을 신고하였다. 유럽위원회는 3월 1일, 세부심사를 개시하였고, GE는 대형상업기용 및 대형국내기용 제트엔진 시장에서 이미 단독으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의 재정력과 결합된 강대한 시장지위와 항공기 임대의 수직통합은 동 시장에 있어 GE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심사 결과 하니웰이 법인용 제트 엔진 및 엔진시동기(즉, 엔진제조에 있어 중요한 input) 뿐만 아니라 항공전자기기 및 비항공전자기기의 주요한 공급업자였음이 판명되었다.

양 사의 결합은 대형상업 및 대형국내항공용 제트기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시장에서 GE의 기존 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항공전자기기, 비항공전자기기 및 법인용 제트 엔진의

공급시장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당해 지배적 지위는 몇몇 시장에 있어 수평적 중복, GE의 금융력 강화 및 하니웰 사업의 수직통합뿐만 아니라 양 사의 보충적 제품의 통합 결과로서 형성·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매수후의 기업이 양 사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제품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경쟁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로써 이러한 시장에 있어 경쟁을 배제하고 최종적인 제품의 품질, 서비스 및 소비자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GE는 6월 14일,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확약을 제시하였지만 유럽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는 경쟁상의 문제를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GE는 확약의 제안기한을 초과한 6월 28일, 새로운 일련의 문제해소조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 역시 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지적된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의 여부가 충분하고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수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쟁상의 우려에 대한 내용 및 GE가 모든 경쟁상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확약을 제안할 수 없었던 사실로부터 유럽위원회는 당해 매수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EU의 합병규칙에 관한 배경

본 건은 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추가한 유럽경제지역에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합병·매수에 대한 one-stop shop이 채용된

1990년 9월 아래, 유럽위원회가 저지한 합병의 15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국 기업간의 합병을 금지한 것으로는 2건뿐이다.

유럽위원회는 당사자의 전세계에서의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를 넘고, 당사자 중 적어도 2사의 각각의 공동체내에서의 매출액이 적어도 2억 5천만 유로인 경우 등이 「집중」으로 정의되어지는 모든 합병, 매수 및 취득, 기타의 거래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유럽에 있어 합병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동 합병이 지배적 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지의 여부이다. 유럽의 합병규칙은 경쟁업자의 보호에 관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과 기술혁신 및 경쟁적 가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으로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에 관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2001. 7. 3. 유럽위원회 발표

일 본

**독점금지연구회,
절차규정의 정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집중규제를 중심으로 독점금지법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이후 독점금지법연구회(의장 宮澤 健一 — 喬大학 명예교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일반집중규제와 절차 규정 등에 관

해 보다 전문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독점금지법연구회 절차관계 등 부서모임(의장 根岸 哲 神戸대학 교수)」을 지난 2월 아래 7차례에 걸쳐 가졌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독점금지법연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는 현재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집중규제에 관한 검토결과와 함께 올해 가을까지 종합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첫째,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절차에 관한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외국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서류송달절차를 검토했다. 둘째, 이미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배제조치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추가에 관한 검토이다. 위반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쟁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확실히 배제되도록 배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배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으로서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의 제한행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위반행위 사실 해명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감면 제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절차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제도의 개요

독점금지법상의 서류송달에 관해서

는 동 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일본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중 제99조(송달실시기관), 제103조(송달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서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규정 중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준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상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글벌화됨에 따라 재외자에 대하여도 서류송달이 필요한 사안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 송달규정의 정비에 관하여 검토한다.

2. 타 법령에 있어서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 방법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송달방법으로, 법 제108조에서 “외국에 해야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의 관할관청 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외국으로의 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송달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동의 없이 해당국에 공권력을 행사(송달 실시)하는 것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으로의 송달은 해당국과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등기우편송달(동 법 제107조)은 송달할 국가의 동의가 없는 한, 외국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국의 우편증서를 이용한 것이 되어 해당국의 주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국세통칙법 및 특허법

국세통칙법과 특허법은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각각의 법률에서 서류송달규정을 두고 있다(특허법은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국세통칙법상 송달방법 중에서 재외자에 대한 송달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는 우편에 의한 송달(동 법 제12조) 및 공시송달(동 법 제14조)이 있다. 동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서 “외국에 해야 할 송달에 대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특허법은 관리자가 재외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있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는다면 절차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특허관리인은 모든 절차에 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8조). 나아가 재외자에게 특허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92조제1항). 그러나 재외자에게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동 조 제2항). 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동 조 제3항). 이러한 방법은 민사소송법상 등기우편송달에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문제점

독점금지법상 서류를 재외자에게 송

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의 예를 모방하여 원칙적으로는 외국으로의 송달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송달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외국으로의 송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으로의 송달에 관해서는 조약이나 국내법 등 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가 존재한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상 서류송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초가 없다. 따라서 외국으로의 송달규정을 독점금지법상 정비하는 것만으로 독점금지법상 서류송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외국으로의 송달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외국과의 합의(조약, 양국간의 결정)

② 국내법의 정비(외국으로의 경쟁법 관련 서류송달에 관한 수탁기관의 법정 등)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쟁법 관련 서류송달에 관한 양국간 결정 또는 다국간 조약을 체결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당장 외국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서류가 실제로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송달방법이다. 따라서 적정절차 보장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서류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빌침을 담은 출두명령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송달방법의 연구

서류송달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점금지

법 위반행위의 배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 국내의 거점을 통하여 송달을 시도해 보는 것, 국내에서 서류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것, 출두를 요청하는 것, 상대방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의 협력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 등 송달방법에 대한 궁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앞으로의 방향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앞으로도 국제적인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증가할 것이므로, 독점금지법상 서류를 재외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송달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를 모방하여 외국으로의 송달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의한 송달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조약 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송달의 실시가 곤란하고, 예외적인 송달방법으로서 공시송달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각 서류의 성격이나 송달을 행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송달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배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소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등 송달방법의 연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01. 8. 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